

## 부정행위자 기준 및 조치

□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를 준용하여 부정행위자 기준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며, **부정행위자 적발 즉시 퇴실 조치함**

구분	위반행위
해당시험 무효처리 및 5년간 응시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</li> <li>▪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</li> <li>▪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</li> <li>▪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</li> <li>▪ 외국어, 가산점, 자격증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</li> <li>▪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</li> </ul>
해당시험 무효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</li> <li>▪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</li> <li>▪ 허용되지 아니한 계산기, 휴대전화, MP3, 녹음기, 이어플러그, 손목시계(아날로그시계 제외), 메모지, 기타 전자기기 등을 가지고 있는 행위</li> <li>▪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</li> <li>▪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</li> <li>▪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</li> <li>▪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▪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</li> <li>▪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</li> <li>▪ 휴대전화 전화를 끄지 않고 보관 중 벨이 울리는 경우(진동, 메시지 알림 등 포함)</li> </ul>

※ 부정행위자는 고사본부에서 부정행위자 확인서 작성 후 귀가(본인 작성 거부 시 감독관이 작성)